

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

① 적용 지역

-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(강화군·옹진군 제외), 경기도

② 적용 대상 등

- (대상) 유흥시설 5종(무도장* 포함) 및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**, 공연장***

* 무도장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로서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(볼룸댄스)를 할 수 있는 시설

**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: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으로서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·음료·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

*** 「공연법」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이 아닌 공연장. 단, 대학 부속시설 등 공연법 상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춘 공연 목적 시설로서 공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한 경우, 정규공연시설로 간주

- 클럽·나이트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(무도장)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 및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

※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·조정 가능하며,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③ 적용 기간

- 2021년 8월 23일(월) 0시 ~ 2021년 9월 5일(일) 24시

④ 법적 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호, 제80조제7호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

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5 추진내용 및 절차

- ① (중대본) 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·나이트, 감성주점, 헌팅포차), 콜라텍·무도장, 홀덤펍·홀덤게임장, 정규공연장 외 공연장 집합금지 조치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)
- ↓
- ② (지자체)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(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- ↓
- ③ (지자체)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,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

○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
☞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제49조제1항제2호)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

-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

○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
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

-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

※ 다만,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, 지자체에서 기준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- 위반 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안내
-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-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(벌금300만원 이하)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